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 경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기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 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.

지난 8월 수도권을 덮친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폭우 등 재난으로부터
시민의 주거안전 및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
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

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
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